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02
----------	-------

발의연월일 : 2019. 6. 14.

발 의 자 : 황주홍 · 이찬열 · 장병완
원유철 · 이동섭 · 오영훈
경대수 · 정동영 · 박주현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 시험,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을 실시할 때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채용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혜 채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면접위원 구성의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인자는 면접 시험을 통하여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면접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1.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의2(면접위원 구성의 특례)</u> <u>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u> <u>인자는 면접 시험을 통하여 채</u> <u>용을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u> <u>의 면접위원을 두어야 한다. 이</u> <u>경우 전체 면접위원 중 2분의</u> <u>1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하여</u> <u>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u> <u>양선거관리위원회</u> 2.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u>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u> <u>관</u>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u>자치단체</u>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u>법률」에 따른 공공기관</u> 5. <u>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u> <u>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u> <u>나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